

「전문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모집 공고

법무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국어 능력과 중간기술수준의 역량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을 양성하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국내 전문대학 학과 중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를 모집·지정할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8일

법무부장관

1. 시범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국내 전문대학을 활용하여 한국어에 능숙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중간 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육성
- 저임금 단순노무 인력을 해외 직접 도입하는 대신 기술력과 '적정 임금' 기반의 우수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는 체계 마련
- 지역 내 제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우수 외국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신설}E-7-M (K-CORE) 비자 발급

◆ **E-7-M (K-CORE, Korea College-to-Regional Employment) 비자** : 국내 전문대에서 한국어와 기술을 익힌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취업비자

- 지역산업의 핵심(Core) 인력으로, 전문인력과 非전문인력의 중간(middle-skill) 수준임을 고려해 E-7-M 약호 부여

○ 시범운영 기간

- '26. 1월 중 ~ '27. 12. 31. (2년)
- 시범기간이 종료되기 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기간 연장 또는 정규 사업화 여부를 결정

* (성과평가 요소) 유학생 취업률, 취업지원 여부, 유학생 전담조직, 불법체류율, 한국어 능력, 국적 다양성, 내국인 학생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임금 수준, 취업률) 등

○ 심사 배제 및 취소사유

- 법무부는 아래 사유가 있는 대학에 대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선정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지정 후에도 취소 가능

- ▶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신청을 한 경우
- ▶ 「출입국관리법」 등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로서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 기타 법무부의 정당한 개선·보완 지시에 불응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 모집인원

- 유학생 수는 학과 정원의 100% 이내로 하고, 최대 50명까지 허용하되, 향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확대 가능

2. 신청자격 및 지정 절차

본 공고문에서 정한 선정방식과 절차에 동의하는 대학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신청한 대학에 귀속됨

○ 신청자격(아래 요건을 갖춘 전문대학은 1개 학과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중 '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에서 인증 대학 이상의 평가를 받은 학교

【'24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전문대학(22개)】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경남정보대, 경북대, 구미대, 군장대, 대림대, 동의과학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천대, 서울예술대, 서정대, 영진전문대, 오산대, 용인예술과학대, 울산과학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 한국영상대, 한양여자대, 호산대

- ※ '26년 추가 지정 시에도 '25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제"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향후 인증대학 외 일반대학까지 확대하는 방안 검토 예정

- 시범사업 대상은 제조업 관련 전공(예: 자동차 제조·정밀기계 등)에 한정

- ※ 인문·사회·예체능 및 서비스 분야 학과(예: 호텔, 보건)는 제외

- ※ 조선업 분야(조선용접공,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는 현재 광역형 비자 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

○ 지정 절차



-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대학(학과)은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을 희망할 경우 법무부에 신청서 제출
 - 광역지자체는 전문대학 추천서 및 인력부족현황 자료 제출
 - * 인력부족현황 등은 광역지자체 추천서에 첨부된 자료에 근거해 평가하며, 기타 평가요소는 전문대학이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심사
 - 민간위원과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5가지 항목(^①산학연계, ^②재정 건전성, ^③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④기술·전공교육의 충실성, ^⑤추진 역량)에 따라 심의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최종 지정(지정증 교부)
- ※ 세부 평가요소는 (붙임 1) 참조

3.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시 주요 혜택

○ 유학생의 편입·전과 및 어학연수생(D-4)의 자격변경 허용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의 ^①국내 타 대학(4년제, 전문대학 모두 해당) 유학생의 편입, ^②동일대학 유학생의 전문기술학과로 전과 허용, ^③어학연수생(D-4)의 유학생(D-2) 자격변경 후 편·입학 허용
- ※ (입학 시 한국어 요건) ①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취득, ③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 중 하나 충족

○ 유학생에 대한 재정능력 요건 면제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유학(D-2)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연장 시 필요한 재정능력 요건 면제

	일반 학위과정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수도권 소재 대학	2,000만원	면제
지방 소재 대학	1,600만원	

- 주중 최대 35시간까지 시간제 취업 허용(현행 전문대 : 주중 최대 30시간)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사전 허가가 있는 경우 마지막 학기에 전공 관련 업체에서 인턴 활동 허용

○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절차 간소화

- ①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졸업(예정),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TOPIK 5급도 인정) 이수, ③전공관련 업체와 고용계약(초임 연봉 2,600만원* 1년 이상) 체결 등 모두 충족 시, 신설 E-7-M(K-CORE) 비자 발급**

* 해당 금액은 '25년 숙련기능인력(E-7-4) 임금 요건을 준용한 것으로, 향후 임금 기준 변동 시 조정 가능

** ① ~ ③ 요건을 갖춘 경우 특정활동(E-7)의 "고용 필요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비 외국인 고용비율 쿼터(20%) 완화

○ 거주(F-2) 체류자격 취득 기회 제공

- 졸업생이 E-7-M 비자로 5년 이상 계속 취업 활동을 한 경우 거주(F-2) 자격 신청 허용
- 졸업생이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거주(F-2) 자격 신청 허용

4. 공고 및 접수기간, 선정결과 발표

○ 공고기간 : '25. 12. 8.(월) ~ '26. 1. 9.(금)

○ 접수기간 : '25. 12. 8(월) 09:00 ~ '26. 1. 9.(금) 18:00

○ 선정결과 발표 : '26. 1월 중

※ 선정결과는 법무부(www.moj.go.kr),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www.immigration.go.kr) 홈페이지와 하이코리아(www.hikroea.go.kr)에 공지 예정

○ 지정증 교부일자는 별도 통보

5.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 서류

- ①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 신청서 (서식 1)
- ②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 (서식 2)
- ③ 광역지자체 추천서(서식 3)
- ④ 광역지자체 내 인력부족 현황 (서식 4)

○ 접수처 및 문의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외국인 정책과(우편번호 : 13809)
- (문의)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02-2110-4110, 4108, 4109)
- (담당자 e-mail) kiw1206@korea.kr

○ 접수방법 : 제출서류는 ①전자공문으로 송부 후, ②우편으로 원본 제출

붙임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심의 기준

서식 : 1.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 신청서 (전문대학 작성)
2.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 (전문대학 작성)
3. 광역지자체 추천서 (광역 지자체 작성)
4. 광역지자체 내 인력부족 현황 (광역 지자체 작성)

참고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 등 작성 요령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요소	제출 주체
1. 산업수요 및 산학 연계성	1.1. 인력부족 현황	광역시자체 내 인력부족 현황	광역시자체 (10점 배분)
	1.2 산학 연계	산학협력 현황, 기업과의 교육과정 공동설계·운영(MOU), 기업의 겸임교원, 현장실습 참여	전문대학 (90점 배분)
	1.3 졸업생 취업 현황	졸업생(내·외국인 불문) 전공 연관 분야 취업 비율	
	1.4 취업 협약 유무	유학생 취업 보장 협약 체결 여부	
2. 대학 건전성	2.1 학교 재정 건전성	최근 3년 부채비율, 감사의견 등 제출	
3.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3.1 재학생 한국어 능력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 수, 비율	
	3.2 유학생 유치 능력	TOPIK 3급 이상 유학생 유치 계획, 재학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TOPIK 5급으로 대체 가능) 이상 유학생 양성 가능성	
	3.3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전문대학 내 “학점 연계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 여부	
	3.4 유학생의 국적 다양성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유치 계획(특정 국적 유학생 최대 30%)	
4. 기술·전공 교육	4.1. 기술·전공교육	학과의 기술·전공교육의 충실성	
5. 정책 추진 역량	5.1 지자체 연계	전담인력, 지자체 협력 협약 여부	
	5.2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역량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역량	

※ 광역지자체 추천서(10점 부여)에는 지자체와 전문대학 간 연계·협력 사항을 기재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 신청서 (서식 1)

신청 전문대학 (학과)	전문대학명/ 학과		
	소속 광역 지자체	○○도 / ○○광역시	
	담당부서	대학의 소관업무 담당부서명	
	총장	000 (☎ - -)	
	담당자	(직급 :) 000 (☎ - - , @ac.kr) (직급 :) 000 (☎ - - , @ac.kr)	

신청 내용	※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 전략과 기대효과를 3줄 이내 간략하게 작성		
----------	---	--	--

위와 같이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학과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00전문대학교	총 장	000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요약] (서식 2)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를 요약하여 2장 이내로 작성

①, □, □ 등 : 글자크기 14.0pt / ○, ○, ○, ○, - 등 : 글자크기 14.0pt /
※, *, · : 글자크기 12.0tp / 줄간격 최소 140이상

□

○

-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본문) (서식 2)

2025. 00. 00

00대학교	
-------	--

I. 육성형 전문기술 학과 일반 현황[0.5~1P]

※ 신청 학과 소개, 학년별 재학생·유학생 교수진 등 구성 현황, 주요 취업 분야 및 기업 등



II. 산학 연계성 [3~4P]

※ 구체적 데이터에 근거 기재(예 : 통계, 뉴스, 기관 발표 자료, 연구 결과 등 간략히 기재)

1

산학 연계

☐ 산학협력 일반 현황

※ 기재 사항 : 육성형 전문기술 학과의 산학협력 교수, 산학협력단 운영 등 일반 현황
출처 : 대학 현황 및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 등

☐ 기업과의 교육과정 공동설계·운영(MOU)

※ 기재 사항 : 육성형 전문기술 학과 연관 지역 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참여 여부
출처 : MOU 체결 협약서 및 계약서 등 기업이 해당 교육과정에 공동으로 설계·운영·참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기업의 겸임교원

※ 기재 사항 : 기업 임직원의 겸임교원 등재·활동 여부
출처 : 4대 보험 가입자 현황, 재직증명서, 임명증 등

☐ 현장실습 참여

※ 기재 사항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전공자가 관련 분야의 지역 기업에 인턴 등 실습 활동내역(내국인 포함)
출처 : 현장실습 운영 현황(대학 알리미 공시 정보) 등

2

졸업생 취업 현황

☐ 졸업생(내국인 포함) 전공 연관 분야 취업 비율

※ 대상 : 신청 학과 졸업생(내국인 포함)이 전공 연관 분야에서 고용계약을 체결(연임금 2,600만원 이상, 고용 기간 1년 이상)하여 취업한 자의 수 및 그 비율

기재 사항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재학생·졸업자 수 대비 취업 현황(취업률) 등 포함
출처 : 대학 자체 취업 조사 결과, 고용 계약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역, 공시 내역 등

3

취업 협약 여부

☐ 유학생 취업 보장 협약 등 체결 여부

※ 대상 : 학생 취업 보장 협약 체결 여부(계약학과 또는 주문식 교육과정 등 운영 현황 및 전문대학(학과)-기업 간 MOU 등 유학생 채용보장 협약)

- 내국인 관련 현황은 간략히 기재

- ① 전문대학(학과)-기업 간 유학생 채용보장 협약(예: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체결 여부
- ②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채용 보장 MOU 체결 등을 통한 전문대학(학과)-기업 간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업 사전 약정 등 체결 여부

Ⅲ.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 (2~3P)

1

재학생 한국어 능력

☐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 수, 비율

※ TOPIK 외에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세종학당 한국어 기준도 추가 인정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세종학당 중급1 이수

※ TOPIK 1~6급 및 미취득자, 파악 불가능 등 전체 유학생의 한국어 능력 현황 기재

2

유학생 유치 능력

☐ TOPIK 3급 이상 유학생 유치 계획

※ TOPIK 3급 이상 등 한국어 능력을 보유한 유학생 유치 계획

☐ 사회통합 및 한국어 관련 수업·프로그램 등 현황

※ 사회통합 및 한국어 등 교육과정 운영 및 담당 교원 현황 등

☐ 향후 계획

※ 유학생이 졸업 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설계

- 교육과정 외에 졸업요건으로 언어능력 포함 또는 졸업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 대한 졸업 후 관리 방안 등까지 폭넓게 기재 가능

3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과의 연계성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대학 연계과정 운영기관 : [지정 / 미지정]

○ (지정 기관인 경우 작성) 운영 현황

※ 수강 학생 및 전임교원 현황, 학생 수 대비 운영 과정 수, 교과목 편성 현황,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 수·비율, 관련 예산 등

□ “학점 연계형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향후 계획

※ 지정·미지정 기관 모두 작성(작성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고려)

4 유학생의 국적 다양성

※ 단일 국적 유학생이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유학생 국적의 다양성 지향

□ 현 재학생 국적 비율(국적 분포 현황)

□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유치 계획

※ (예시) 국적별 입학 정원 조정, 현지 홍보 계획 등

IV. 기술·전공교육(1~2P)

□ 기술·전공교육 일반 현황

※ 육성형전문기술 신청 학과의 기술·전공 교육 과정 운영 일반 현황(학점 운영, 커리큘럼 등)

※ 주요 특징 : 현장실습, 타부처 유학생 프로그램 참여 여부, 산학협력 교수진 등

□ 기술·전공교육 과정의 향후 운영 계획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전공 과정 교육 방안 설계 및 지원 등 향후 운영 방안

※ 취업 후 현장에 빠른 적응과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배양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설계

V. 정책 추진 역량(1~2P)

1 지자체 연계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지정 대비] 전담 인력 배치 여부 및 규모 등

※ 외국인 담당 전임교원, 전공·한국어 교수강사 현황, 예산 등 향후 운용 계획

□ 대학-지자체 협력 협약 및 대학·취업 지원 사업 등 현황

※ 취업 지원, 지원금 관련 협약,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 등

□ **향후 계획(대학-지자체 협력 방안 등)**

※ 향후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학과 운용 및 졸업자 취업 지원 등에 관한 협력 방안

2

대학 및 지자체의 추진 의지와 역량

□ **대학 추진 의지와 역량**

※ 사업계획 목표를 구체적·현실적으로 제시 : ①단기(1~2년, 도입기) · 장기(3년 이상, 정착기)별
② 입학·교육·졸업 등 운영 단계별 ③ 사업 규모 및 유학생 수를 고려한 적정 인력 및 항목별 예산 등

□ **지자체 추진 의지와 역량**

※ 주무부서 유무, 담당 인력 구성 및 담당자별 역할, 업무 전담계획 등

※ 지자체의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제도 관련 예산·인력 등 지원 방안 마련 등 지원 정책
마련의 유무 및 구체성(예 : 대학-지자체-산업계-단체·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등)

〈작성시 주의 사항〉

- ① 사업계획서 전체는 총 10쪽 이내로 작성(부득이한 경우라도 15쪽 이내 엄수)
- ② 제목·항목은 수정 불가, 필요시 기타 항목을 추가하여 간략히 작성
- ③ 공시알리미, 대학 홈페이지, 기타 기관·단체 등을 통해 공시된 사항 우선 활용
- ④ 모든 통계자료는 그 출처와 시점 등을 명확하게 표기
- ⑤ 가능한 표·그림·그래프 방식으로 작성
- ⑥ 학생 관련 내용은 내국인·외국인 구분하여 표기하되, 외국인 유학생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재
- ⑦ 2025년 현재 기준 현황 및 공시·공고된 사실을 기준으로 하되, 아직 2025년 공고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 직전년도 내역으로 작성 가능(예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 ⑧ 제출시 작성 방법 등(청서)은 삭제

①, □, □ 등 : 글자크기 14.0pt / ○, ○, ○, ○, - 등 : 글자크기 14.0pt /
※, *, · : 글자크기 12.0tp / 줄간격 최소 140이상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광역지자체 추천서 (서식 3)

광역지자체	광역지자체	
	담당자	(직급 :) 000 (☎ - - , @go.kr) (직급 :) 000 (☎ - - , @go.kr)
추천 대학 및 학과	전문대학명/ 학과	○○전문대학 ○○과
	총장	000 (☎ - -)
인력부족 현황		
기타 의견		

위와 같이 ○○전문대학 ○○과를 육성형 전문기술학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도 (○○광역시, 특별시)	도지사 (○○광역시장, 특별시장)	000 (인)
------------------	-----------------------	---------

법무부장관 귀하

광역시자체 내 인력부족 현황 (서식 4)

□ 산업 경제 현황

- ※ 지역 산업(제조업 : 자동차·전자 등) 경제 현황(매출·고용 규모 및 연도별 추이 등)
- ※ 육성형전문기술학과 연관 산업 관련 지역경제의 일반 현황과 변화 추이 등 작성
(예 : 위치, 인구, 경제활동인구, 세대 전출입 현황, 주요 산업 특성 등)

□ 사업체 고용 현황

- ※ 지역 내 기업별 종사자 규모별 현황 등
- ※ 외국인고용 사업장 현황 및 규모

□ 신규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 ※ 인력 부족 현황 등에 근거하여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 기재

〈작성시 주의 사항〉

- ① 육성형 전문기술 학과 졸업생이 취업 가능한 지역 연관 산업의 인력부족 현황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②광역시자체 내 인력부족 현황은 표·그림·그래프 등을 우선 활용하여 간략하게(총 5쪽 이내) 작성
- ③대제목은 수정 불가, 필요시 기타 항목을 수정·추가하여 작성 가능
- ④관련 통계, 기관·단체 등의 조사·연구 자료, 과거 공문 내용, 기사·뉴스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출처와 시점 등을 명확하게 표기(가능한 최근(2년내) 자료 우선 활용
- ⑤제출시 작성 방법 등(청서)은 삭제

①, □, □ 등 : 글자크기 14.0pt / ○, ○, ○, ○, - 등 : 글자크기 14.0pt /
※, *, · : 글자크기 12.0tp / 줄간격 최소 140이상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 검토 후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별도 요청 예정
- 모든 통계자료 등은 그 출처 및 시점을 명확하게 표기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 신청서

- (기재 사항)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사업 대상 전공 학과, 사업의 목적, 사업 추진 전략과 기대효과 등 작성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요약)(총 2쪽 이내)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 본문을 요약하여 제출

○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사업계획서(본문)(총 10쪽 이내, 부득이한 경우라도 15쪽 이내 업수)

- (산업수요 및 산학 연계성) 산학 연계, 졸업생 취업 현황, 취업 협약 실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대학 건전성) 대학 재정 현황을 중심으로 기재
- (한국어 교육 등 사회통합정책) TOPIK 3급 이상 유학생 유치 계획, 재학생 한국어 능력 현황,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 유치 계획 등 기재
- (정책 추진 의지 역량) 학과 전담인력 확보, 지자체 협력 협약, 기타 추진 의지와 역량에 관한 사항 작성